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1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3. 9.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은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구현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.
- 다만, 개정안의 취지·수단 및 세부 지원 대상 등이 현행 조문(제5조)과 다소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, 입법경제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 통합 및 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전통문화 관련 문화취약계층 권리 증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5조).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
4. 전통문화 관련 민·관·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

안 제7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.

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증강현실, 가상현실,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및 전통예술 자원의 디지털 구현 사업

2. 청소년, 문화소의 계층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
3. 교육기관, 대학,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한 전통문화·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

4. 그밖에 전통문화의 디지털 구현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
4. 전통문화 관련 민·관·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</u></p> <p>4. <u>전통문화 관련 민·관·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